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85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이정문・민형배・김남근

이학영 · 채현일 · 문진석

박 정・김원이・이연희

이재관 • 문금주 • 홍기원

조승래 · 서영석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에는 일정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그 제정 또는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.

그러나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거래 분야에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,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,「보험업법」 등 개별 근거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감독하고 있는데, 각 근거법률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·개정 요청 근거를 두고 있지아니하여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기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·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 려는 것임(안 제3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장제1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소비자단체등의 표준약관 제·개정 요청) ① 「소비자기본 법」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(이하 이 조에서 "소비자단체등"이라 한다) 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금융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 관(이하 이 조에서 "표준약관"이라 한다)을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등은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업 거래 분야에서의 표준약관에 대하여는 그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 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언 행 <u><신 설></u>	제32조의2(소비자단체등의 표준 약관 제·개정 요청) ① 「소 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
	소비자원(이하 이 조에서 "소 비자단체등"이라 한다)은 소비 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금융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 (이하 이 조에서 "표준약관"이 라 한다)을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
	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단체등은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업 거래 분야에서의 표준 약관에 대하여는 그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

<u>있다.</u>